

인천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4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양선화

피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조용익, 고민지, 이단비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배상근, 안혜진, 김창희

변론 종결 2021. 3. 4.

판결 선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3.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C에게 별지 2 채권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4.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9.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C에게 별지 2 채권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5. 2. 2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2. 25.부터 2016. 2.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5. 2. 2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2015. 2. 25. E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6. 2. 19. 보증기한을 2017. 2. 24.까지로, 2017. 2. 23. 보증기한을 2018. 2. 23.까지로, 2018. 2. 20.

보증기한을 2019. 2. 22.까지로 각 연장하였다.

4) 원고와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약정서에서 사전구상채권 발생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중략)

4. F단체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채무자 C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피고 A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12.자 근저당권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8. 3. 13.자 접수 제24039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8. 4. 6.자 접수 제35423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피고 B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9. 3.자 접수 제325221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사전구상 사유의 발생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 관하여 2018. 10. 29.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사유발생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및 배당절차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21. 1. 27. 근저당권자인 피고 A가 464,524,57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I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20. 2. 14. 근저당권자인 피고 B가 20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한 채무자 C은 본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 및 자신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C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확정된 배당금 채권을 채무자 C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2020. 12. 4.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피고 B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그러하기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각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도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그에 관하여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피고 B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464,524,575원을 배당받은 피고 A와 C 사이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와 C 사이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 A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과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구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 B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여지가 남아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 A에게 배당된 금원 중 일부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

추가배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B가 사해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하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C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1호증의 기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에 대하여 '2018. 10. 29.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전구상채권의 발생 사실 외에 대출기관, 대출원리금 액수, 대출원리금이 연체되기 시작한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②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채권의 발생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③ 원고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의 피고 B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주된 사정으로 들어 C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C에 대한 부실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영업에 있어 상황에 따라 미수금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미수금의 존재가 곧 재정의 부실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G는 피고 B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 12. 10.부터 타이어 등을 공급받아 왔고, C에 대하여 2018. 10. 29.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사유가 발생한 후인 2019. 1. 31.에야 G가 피고 B에 발행한 어음이 지급거절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④ C이 2018. 7.경 부과된 지방세 일부를 체납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과세당국에 의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가까운 장래에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18. 3. 13. 5억 원을 대출받아 바로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의 G에 대한 외상채권이 2018. 4. 30. 기준 1,192,786,676원이었다가 2018. 8. 30.에는 1,273,208,532원으로 상당히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 A로부터 추가로 사업자금을 융통받고, 피고 B로부터 타이어 등을 계속 공급받아 G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바, C의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

판사하진우

판사김두일

별지